

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
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3일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 육 장

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일자 : 2021년 12월 23일
2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학교 현황

연번	구분	학 교 명	위 치	보호구역 면적(m ²)		비고 (고시사유)
				절대	상대	
1	신설	(가칭)창릉1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2 일원	18,021	167,246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2	신설	(가칭)창릉2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6-2 일원	14,337	161,174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3	신설	(가칭)창릉3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99 일원	16,684	169,322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4	신설	(가칭)창릉4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-1 일원	20,097	161,005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5	신설	(가칭)창릉5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2 일원	14,535	168,956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6	신설	(가칭)창릉6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65-1 일원	15,416	164,061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7	신설	(가칭)창릉7유치원	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2-1 일원	15,929	162,991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8	신설	(가칭)창릉1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6-2 일원	28,745	196,750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9	신설	(가칭)창릉2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-4 일원	32,307	199,011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0	신설	(가칭)창릉3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3 일원	28,475	196,839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1	신설	(가칭)창릉4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 일원	31,468	191,574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2	신설	(가칭)창릉5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5 일원	28,386	194,820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
13	신설	(가칭)창릉6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8-3 일원	27,420	192,235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4	신설	(가칭)창릉7초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09 일원	26,876	190,511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5	신설	(가칭)창릉1중학교	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1-2 일원	28,912	191,063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6	신설	(가칭)창릉2중학교	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3 일원	24,578	194,507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7	신설	(가칭)창릉3중학교	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06 일원	31,272	194,576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8	신설	(가칭)창릉1고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8-1 일원	25,170	197,614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19	신설	(가칭)창릉2고등학교	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51 일원	32,940	193,081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20	신설	(가칭)창릉1특수학교	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72 일원	33,742	195,472	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85호

3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

가. 절대보호구역 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

나. 상대보호구역 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
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※ 다만,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가 없는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
으로부터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절대보호구역을 설정

4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

5.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

-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
문의 (☎ 031-900-2911)

6. 참고사항

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,
지번누락,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